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366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 7.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7. 16. 접수 제177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사유 : 피고의 부친은 2021. 4. 20. 답변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이 법원은 이미 2020. 12. 9.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여 실질적 내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충분히 주었으며, 이에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1. 6.

2.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김정태

별지